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2,835,544	10,285,066
일반회계	319,567,644	9,587,029
특별회계	23,267,900	698,037
기타특별회계	23,267,900	698,03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77,291	23,319
주택사업특별회계	554,707	16,641
새마을소득사업운영 · 관리특별회계	966,785	29,00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193,084	35,793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478,087	14,343
주차장특별회계	275,842	8,275
수질개선특별회계	18,713,116	561,393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308,988	9,270

제 2 조 세입.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.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시업조서" 와 같다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73,125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수 있다

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는 간추처리하며,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며 다만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할 수 있다.